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120
----------	-------

발의연월일 : 2025. 9. 18.

발 의 자 : 이재정 · 김상욱 · 김영배
강선우 · 박희승 · 강경숙
한정애 · 문정복 · 모경종
진성준 · 박 정 · 송재봉
임호선 · 이용선 · 이재강
박홍배 · 장철민 의원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주관기관이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체계적으로 발굴·추진 및 평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한편, 국가가 국제개발협력의 분야별 전문 인력을 양성하도록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외에서 실시되는 국제개발협력의 특성상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을 위해서는 주관기관의 점검 외에도 현지에서의 현황 파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국제개발협력의 경우 그 특성상 전문 인력 활용의 필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재외공관이 전문 인력을 활용할 근거가 미비하여

국제개발협력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관기관의 점검 및 사후조치 권한을 강화하고, 재외공관이 관할구역 내 국제개발협력 사업 현황 등을 파악하여 주관기관 및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재외공관이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발굴·모니터링·평가 전 과정에서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개발협력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및 제23조제2항·제5항).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활동에”를 “활동을 위하여”로, “자료를”을 “경우 관련 자료 또는 조치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재외공관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해외위난상황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내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관기관을 거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재외공관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9조에 따른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점검 및 지원) ① (생략)	제22조(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점검 및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시행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 활동을 위하여 ----- 경우 관련 자료 또는 조치를----- -----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재외공관의 역할) ① (생략) <신 설>	제23조(재외공관의 역할) ① (현행과 같음)
	② 재외공관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해외위난상황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내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관기관을 거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③ · 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

<u><신 설></u>	과 같음) <u>⑤ 재외공관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제19조에 따른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다.</u>
--------------------	--